E - 90 - 2011

온도계측장치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
201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제정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 윤동현개정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 윤동현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시스템연구실

○ 제·개정경과

- 1996년 12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- 2002년 8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- 2008년 10월 전기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- 2008년 11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
- 2011년 12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ㅇ 관련규격

- 미국 ISA의 Standard and practices for instrumentation, 1983
- KS A 0514 : 충만식 온도계 및 바이메탈식 온도계에 의한 온도측정방법, 2005
- o 관련법령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(계측장치 등의 설치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1년 12월 29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E - 90 - 2011

온도계측장치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73조 (계측장치 등의 설치)의 규정에 따라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온도계측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의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온도계측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온도계측장치"라 함은 용기 또는 배관 등의 화학설비 및 장치에 부착되어 공정중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바이메탈온도계, 봉입식 온도계(Filled thermal element), 열전대 온도계, 저항온도계, 색온도계, 방사식 온도계 등을 말한다.
 - (나) "보호관"이라 함은 열전대, 저항온도감지기 등의 감온부를 기계적 및 화학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.
 - (다) "바이메탈온도계"라 함은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종류의 금속판을 접합하여 온도 변화에 따라 휘어짐을 이용하는 온도계를 말한다.
 - (라) "봉입식 온도계"라 함은 감온부에 액체나 기체를 주입하여 팽창력을 이용하는 온도계를 말한다.
 - (마) "열전대 온도계"라 함은 제벡(Seebeck)효과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두 종류 금속선의 한쪽을 접합시켜 열을 가할 경우 발생되는 열기전력을 이용하는 온도계를 말한다.

E - 90 - 2011

- (바) "저항온도계"라 함은 백금 등의 측온 저항소자로 온도에 따라 변화되는 전기저항을 이용하는 온도계를 말한다.
- (사) "색온도계"라 함은 피측정체의 변화되는 색에 의해서 측정하는 온도계를 말하다.
- (아) "방사식 온도계"라 함은 물체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방사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온도계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 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온도계측장치의 특징과 선정

4.1 바이메탈온도계

- (1) 현장에서 직접 읽고 알 수 있는 곳에 적용한다.
- (2) 측정범위는 -30 ℃~400 ℃이다.
- (3) 구조가 간단하고 응답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이다.
- (4) 400 ℃ 이상의 온도에서는 사용 불가능하다.
- (5) 온도계의 유리면에 운전온도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한다.

4.2 봉입식 온도계

- (1)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사용되며 고온측정이 곤란하다.
- (2) 종류는 액체봉입식 온도계, 증기압식 온도계 및 기체봉입식 온도계 등이 있다.
- (3) 봉입식 온도계의 감온부와 지시기구와의 설치위치는 3 m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다만 3 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온도보상설비를 추가하여야 한다.

E - 90 - 2011

4.3 열전대 온도계

- (1) 측정범위는 -200 ℃~1300 ℃로 공정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며, 고온에서 정확도가 좋다.
- (2) 종류는 철-콘스탄트(IC), 크로멜-아르멜(CA), 구리-콘스탄트(CC), 백금로 디움-백금(PR) 등이 있다.
- (3) 열전대는 다음 사항을 구비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.
- (가) 열기전력이 크고, 온도에 대해서 직선적으로 변화하여야 한다.
- (나) 고온 또는 저온에서 사용해도 열기전력이 안정되고 수명이 길어야 한다.
- (다) 내열 및 내식성이 우수하여야 한다.
- (4) 열전대는 시스형(Sheath)으로 되어야 한다.
- (5) 가열로 등에 설치되어 긴급정지시스템에 연결된 열전대는 접지형이 바람직하다.
- (6) 가열로의 튜브 및 반응기의 표피 열전대는 패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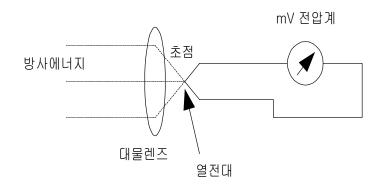
4.4 저항온도계

- (1) 백금(Pt) 100 Ω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.
- (2) 좁은 장소에서의 온도측정이 가능하므로 전동기 등의 권선온도나 회전기 기의 베어링 온도측정에 사용되고 있다.

4.5 방사식 온도계

- (1) 1,800 °C 이하 물체에서 방사하는 에너지의 약 90 % 이상이 적외선인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측온방법은 <그림 1>과 같으며, 측정범위는 700 °C ~ 2000 °C 이다.
- (2) 700 ℃ 이하에서는 특수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.

KOSHA GUIDE E - 90 - 20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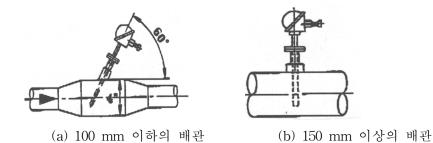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1> 방사식 온도계의 측온방법

5. 보호관

- (1) 보호관의 선정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(가) 보호관의 재질은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내마모성, 내식성, 내열성, 내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.
- (나) 보호관의 두께는 강도를 계산하여 충분한 인장응력 내에 있어야 하고, 최대 허용압력 및 공진의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.
- (다) 보호관의 연결은 가능한 플랜지로 한다. 불가피하여 나사로 배관 등에 연결할 경우에는 나사의 형식에 유의하여야 한다.
- (라) 보호관은 37 mm 플랜지로 하고, 플랜지의 재질은 보호관과 같게 한다.
- (마) 보호관과 플랜지와의 용접은 내부든 외부든 한쪽만 실시한다.
- (바) 보호관의 길이는 배관, 용기의 크기, 측정지점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.
- (사) 보호관은 봉형(Drilled bar)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아) 열전대가 내부의 말단부분에 밀착되도록 나사접속을 한다.
- (2) 배관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.
- (가) 보호관의 길이는 배관의 중앙에 도달되도록 설치한다.
- (나) 배관의 직경이 75 mm 이하인 경우에는 100 mm로 확관하여 <그림 2> 와 같이 유체흐름의 반대방향으로 60° 경사지게 설치한다.
- (다) 배관의 직경이 150 mm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으로 설치한다.

E - 90 - 2011



<그림 2> 배관 상에서의 보호관의 설치방법

- (라) 유체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배관 내경의 10 배 이상 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3) 용기 등에 설치할 경우에는 플랜지로 하고, 용기 등의 내경에 1/3 이상이 되도록 충분한 길이로 설치한다.
- (4) 보호관의 검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보호관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편심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한다.
 - (나) 수압시험은 계산된 허용최대압력 이하로 한다.
 - (다) 용접형인 경우는 용접부위에 대하여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(라) 보호관과 플랜지 연결부위는 비파괴검사로 용접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.